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859
--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17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소영철 의원 외 34명

나. 제안일자 : 2024년 5월 27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라. 상정일자

-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4년 6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소영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을 원가 수준, 적자 규모, 수도권 지역

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,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

- 그런데, 요금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,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하여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용권 가격을 정할 수 있음
- 실제로,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‘기후동행카드’의 경우,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,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음
- 또한 ‘돌려쓰기’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었고, 현재도 뚜렷한 예방 및 단속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
- 이에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정기·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·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6. 4. ~ 2024. 6. 8.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대중교통 정기권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에도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여 산출근거, 운영 계획, 부정사용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에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

1) 교통정책과-9920('24.6.10.) “제324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계획 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연차별시행계획에 대중교통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을 포함시켜 서울시가 시행중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‘기후동행카드’²⁾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교통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‘기후동행카드’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
- ‘기후동행카드’는 서울권역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) 및 따릉이를 월 65,000원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 지 70일만에 누적판매 100만장을 돌파³⁾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

2) 기후동행카드: 서울권역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), 따릉이를 월 6만 5천원으로 무제한 이용

3) 기후동행카드 누적 100만장 판매..평일 이용자 50만명 넘어서-서울특별시 보도자료('24.4.8.)

- 누적 카드 판매수: 1,037,027장(모바일 508,603장, 실물카드 528,424장)

○ 서울시는 ‘기후동행카드’ 시범사업으로 ’24년에 총 401억(1~5월까지 시범사업비 400억, 효과분석용역비 1억원)을 편성하였으나, ’24.5월 기준 예상 판매량의 2배를 넘어섰고,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과 본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⁴⁾하는 등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‘기후동행카드’는 시행 초기부터 실물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, 월 65,000원 요금에 대한 적정성 논란 등 여러 개선점 또한 공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후 본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⁵⁾이라고 밝힌 바 있고,

특히 실물카드의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홈페이지 카드 미등록 시 충전 불가 등을 시행중이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해 단속이 쉽지 않은 점, 당초계획⁶⁾보다 실물카드 판매량이 높은 점⁷⁾ 등 실물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실제 현장 적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짐

○ 서울시는 ‘기후동행카드’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, 수도권 확대, 청년할인, 리버버스 이용, 관광객을 위한 단

4) 서울특별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- 기후동행카드 운영: 69,684백만원

5)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「기후동행카드」 시범사업 추진계획(교통정책과-16627호, ’23.9.27.)

- ‘기후동행카드’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평가 실시

-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, ’24.7월 본사업 계획에 반영

6)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「기후동행카드」 시범사업 추진계획(교통정책과-16627, ’23.9.27.)

- 기후동행카드 운영방안: (구매) 원칙: 모바일 카드 발급

7) ’24.5월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 142만 9,695장(이중 실물 60만 4,761장, 42%)

활성화 카드 현황 588,605장(모바일 191,820장, 실물 396,785장)

기권 출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⁸⁾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대한 추가 혜택 등으로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‘기후동행카드’와 같은 이용권의 가격 산출기준, 부정사용 단속 및 방지대책⁹⁾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연차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

8) '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‘기후동행카드 운영’ 세부산출근거

- 본사업(7~11월): 45,000백만원 - 단기권 출시: 3,825백만원
- 수도권 확대: 1,620백만원 - 청년할인: 18,900백만원
- 리버버스 연계할인: 313.8백만원 - 기타수수료 등: 25.2백만원

9) 4개월간 부정 사용 0건? 단속 사각지대 놓인 기후동행카드-세계일보('24.6.4.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5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소영철, 강석주, 김규남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
김원중, 김재진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
박춘선, 서호연, 옥재은,
유만희, 이병윤, 이상욱,
이상훈, 이성배, 이숙자,
이은림, 이종환, 임규호,
임춘대, 장태용, 최유희,
허 훈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을 원가 수준, 적자 규모,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,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그런데,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,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하여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용권 가격을 정할 수 있음
- 실제로,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'기후동행 카드'의 경우,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,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음
- 또한 '돌려쓰기'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었고, 현재도 뚜렷한 예방 및 단속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
- 이에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정기·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·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<u>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 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) 제2항* (시행계획의 주요내용)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* 제2항 :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가격 산출,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, 지원계획 등의 사항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